



부 산 고 등 법 원

울 산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울산)2025누100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항소인 ○○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합531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6행의 "공동으로"를 삭제하고, 같은 쪽 8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이라고 한다)"를 "(위 토지는 C, D의 공동소유이고, 위 건물은 D 단독소유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상단의 첫 번째 표 부분을 아래 표로 교체한다.

구분	과세표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2,209,966,114원	88,398,640원	8,839,860원	4,419,930원
이 사건 토지 급·배수시설	5,893,370원	117,860원	0원	11,780원
이 사건 도로	234,140,516원	9,365,620원	936,560원	468,280원
합계	2,450,000,000원	97,882,120원	9,776,420원	4,899,990원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2. 12. 26.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¹⁾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22.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1)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의 법리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시기 등'이라는 표제 아래 무상승계취득(제1항) 및 유상승계취득(제2항) 등 여러 방식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그 취득의 시기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시기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잔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판사 조○○

판사 김○○